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 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.

제 목 : 한국은행 울산본부, 「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」 기한 연장

- 한국은행 울산본부(본부장 이강원)는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(2,248억원)의 기한(은행 대출취급 기준)을 1년 연장(2024.7월 → 2025.7월) 하기로 하였음
 - (배경) 취약·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, 폐업 확대 등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동 지원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
 - (내용)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(1년간) 지원 요건(업종, 신용등급 등)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
 - 선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운용
- (기대 효과) 울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“자세한 내용은 <붙임> 참조”

문의처 : 한국은행 울산본부 업무팀 과장 안상현 (Tel: 052-259-7431)

“한국은행 울산본부 보도자료는 홈페이지(<http://www.bok.or.kr/ulsan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 울산본부

(붙임)

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연장 시행방안

◇ (변경내용) 기한(대출취급일 기준)을 1년 연장(2024.7월 → 2025.7월)하고 지원대상 중소기업 범위를 '중·저신용'에서 '저신용'으로 변경

□ 지원한도 : 2,248억원

□ 지원대상 : 울산광역시 소재 금융기관이 취급한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대출

○ (업종)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업종은 배제*

* <참고> '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대상 제외업종' 참조

○ (신용등급) 기존 중·저신용에서 저신용(6~10등급, 무등급 포함)으로 변경

— 2024년 2~7월중 기 취급된 중신용(4~5등급)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지원할 것이며, 2024년 8월(대출취급일 기준)부터는 저신용(6~10등급, 무등급 포함)만 신규취급 가능

○ (업체당 한도) 은행 대출취급실적 기준 10억원 이내*

* 단일업체가 복수의 대출을 받는 경우 전체 대출금의 합계가 10억원 이내 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대상에 포함

○ (중복지원) 여타 금융증개지원대출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*

* 기존 금중대 관련 대출 상환(대환대출 포함)시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.

○ (지원대상 제외 대출금) 아래 각각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

- 최종부도거래처·폐업업체·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
- 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방식 대출금
-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정책금융으로부터 대출 재원을 지원받고 있는 대출금(단 이차보전 방식의 대출은 지원대상에 포함)

□ **지원기간**

○ **은행 대출취급기간 : 2024. 8. 1. ~ 2025. 7. 31.(1년간)**

○ **한국은행 지원기간(배정 기준) : 2024. 10. 1. ~ 2026. 8. 31.**

- 은행 대출취급기간 내 취급된 대출에 대해 만기(1년 이내)까지 지원

□ **지원비율 : 은행 대출취급실적(말잔 기준)의 75% 해당액을 지원***

* 본부 및 각 지역본부별 은행 대출취급실적에 대한 지원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례 배분

○ 2024년 2~7월중 기 취급된 중신용(4~5등급)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%의 지원비율을 유지(신규지원 불가)

□ **지원금리 :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2.00%***를 적용

* 향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 의거 변동 가능

□ **시행일 : 2024년 8월 1일(은행 대출취급 기준)**

<참고>

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대상 제외업종¹⁾²⁾
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
도소매업	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
운송관련 서비스업	52915 주차장 운영업
주점업	5621 주점업
금융 및 보험업	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부동산업	68 부동산업
전문 서비스업	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
교육 서비스업	855 일반 교습학원
보건업	86 보건업
오락관련 서비스업	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

주: 1)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

2)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분류코드가 아닌 업체의 경우에도 울산본부장이 적합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. 특히 업종에 상관없이 상호명에 '호프'·'부동산'·'약국'·'병원' 등 제외업종으로 판단되는 문구가 포함되거나 불건전, 사행성 조장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